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0. 18) 상정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0. 18)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권 희 춘)

가. 제안이유

- 분산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하여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시 재정에 기여하는 한편,
- 향후 주요재산 취득 시 과중한 재원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조)
- 세입은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변상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함.(안 제2조)
- 세출은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

- 할·합병 및 집단화,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등으로 함.(안 제3조)
-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하되, 세입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함. (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취득하여 토지를 집단화 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여 부천시 재정에 기여하고 함.
○ 특별회계의 세출 방안은?	○ 잡종 재산의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할과 합병 및 집단화, 시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시로 함.
○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할 것인데 세입자원의 부족 해소 방안은 ?	○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를 것이며, 부족재원은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152호
의결 년월일	2007. 10. 26 (제139회)

제출년월일 : 2007. 10.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분산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하여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시 재정에 기여하는 한편,
- 향후 주요재산 취득 시 과중한 재원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조)
- 나. 세입은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변상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함.(안 제2조)
- 다. 세출은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등으로 함.(안 제3조)
- 라.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의 원칙으로 하되, 세입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마.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2.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이자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도비 보조금
5.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시 귀속분
6.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시 귀속분
7. 국·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 취득비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3.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비
4.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제4조(독립재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리)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